

2011. 02. 15.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제천시 보육 조례안 발의

「제천시 보육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불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불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 보육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오 선균 의원 (서명 *46* 날인)

의원  
오 선균

「제천시 보육 조례안」 의안발의  
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오선희	오선희	
이정임	이정임	
김꽃임	김꽃임	
최상기	최상기	
조숙희	조숙희	

## 제천시 보육 조례안

의안번호	1493
------	------

발의연월일 : 2011. 02. 15.  
발 의 자 : 오선균 의원외 4인

### 1. 제안이유

-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시장과 보육시설 관계자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시설 종사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개최 및 출석위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내지 안 제10조)
-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위탁기간, 수탁자 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내지 안 제19조)
-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등 비용의 보조 및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보조금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0조 내지 안 제22조)

### 3. 의견수렴

- 방 법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제천시 홈페이지게재, 관련부서 검토
- 기 간 : 2011. 1. 18 ~ 2. 7(20일간)
- 의견제출
  - 제 출 자 : 제천시장(여성정책과장)
  - 내 용 : 일부 문구수정요구, 조례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없음

## ○ 의견반영

입법예고안	수정안	비고(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목적에서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무실무」에서 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라는 문구를 '용어의 뜻'으로 바꿔어 사용하고 있음(「법무실무」)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7.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 수립과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을 따름

입법예고안	수정안	비고(사유)
제8조(위원회 회의)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당시 자와 공동체 리자 또는 공동의 부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범위의 사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항을 따름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보육정책의 위원회 유형에 따라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을 따름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삭제>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를 따름
제18조(주택자와 시설장의 의무) ② 수탁자와 시설장은 계약도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주택자와 시설장의 의무) ② 수탁자와 시설장은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10월 말 까지, 결산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 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업무지침에 의거 수정

입법예고안	수정안	비고(사유)
<p>제2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li> <li>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li> <li>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어린이집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li> <li>4.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수탁 받은 때</li> <li>5.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li> </ol>	<p>제1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의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li> <li>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li> <li>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li> <li>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li> <li>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li> <li>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li> <li>9.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li> </ol>	<p>「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름</p>
<u>&lt;신설&gt;</u>	<p>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2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p>	공립보육시설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필요

입법예고안	수정안	비고(사유)
<p>제23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 장은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1. 공립, 법인 영유아 보육시 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 보수비</p> <p>2. 교재·교구비</p> <p>3.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운영비</p> <p>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p> <p>5. 친환경 급식 지원경비</p> <p>6.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p> <p>7. 그 밖에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비용</p>	<p>제20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 장은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p> <p>1.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기 축 및 개수·보수 비용</p> <p>2. 보육교사 인건비</p> <p>3. 교재·교구비</p> <p>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 훈련 비용</p> <p>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p> <p>6. 그 밖에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비용</p>	<p>「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를 따름</p>

#### 4.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 붙임 : 1. 제천시 보육 조례안 1부.  
2. 관련부서 검토의견 1부. 끝.

# 제천시 보육 조례안

2011. . . 조례 제 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시설 종사자(이하 "보육시설 관계자"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보육시설 관계자는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워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의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에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립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공립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3조(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① 공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수탁자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법인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고,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

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을 시의 관할 구역내 1개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4조(위탁기간)**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5조(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와 시설장은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10일전 까지, 결산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보육시설의 자율적이고 특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임용 시설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이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1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2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0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공립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

## 공립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비 고
신백어린이집	제천시 의병대로36길 37(신백동)	
신월어린이집	제천시 대학로5길 17(신월동)	
영천어린이집	제천시 청풍호로4마길 14(영천동)	
제천어린이집	제천시 내토로11가길 10-9(서부동)	
청전어린이집	제천시 청전대로15길 70(청전동)	
한천어린이집	제천시 고명로 341(고명동)	

제천  
충청북도시  
자치

문서번호	여성정책과-427 0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11.01.28.

공개

★출산지원 팀장	여성정책 과장	행정복지 국장	부시장	시장	
윤종금	홍희영	윤종설	김항섭	01/28 최명현	
협조	실무관	김익동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보고 (제천시 보육조례안)



행정복지국  
여성정책과

## 제천시 보육 조례안 검토보고

### ■ 조례 발의 현황

1. 발의자 : 제천시의회 오선균 의원

#### 2. 제안이유

제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시장과 보육시설 관계자(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시설 종사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개최 및 출석위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내지 안 제10조)
-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당, 종사자들의 취업정보를 위한 제천시 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 구성·기능·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내지 안 제14조)
-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위탁기간, 수탁자 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내지 안 제22조)
- 공립, 법인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등 비용의 보조 및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보조금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3조 내지 안 제25조)

## ■ 당당부서 검토의견

### 1. 세부 검토사항

#### ○ 제1장 : 총칙

제천시나 보육시설은 아동권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 - 이견 없음

#### ○ 제2장 :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보육 주체들(부모, 보육전문가, 시설장, 시민단체 등)의 균형적 참여로 보육위원의 실질적인 역할강화와 보육정책 결정과정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시

#### 【검토의견】

##### 1. 제6조 4항 내용 수정

(수정안)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 2. 제6조 6항, 7항 삭제

(사유)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항 폐지 의견에 의거

#### ○ 제3장 :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보육정보센터 설치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과 상담, 종사자들의 취업정보를 위하여 설치

#### 【검토의견】

- 우리시의 경우 중소도시로써 현재 63개소의 보육시설 운영
- 조례에 제시된 센터의 기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어린이집 원장들로 이투어진 "어린이집 연합회"나 "보육시설연합회"를 통하여 정보제공 및 안내와 홍보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보육정보센터의 활용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 차후 센터 설립이 필요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가능함으로 조례에 센터설치 규정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제4장 :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검토의견]**

1. 제15조 2항 내용 수정

(수정안) 시장은 법제26조의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에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2. 제21조 4항 내용 수정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3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수탁자가~~

(수정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1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수탁자가~~

(사유)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제5장 : 보조금의 지급 등

시장은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보조

**[검토의견]**

제23조 6항 내용 수정

(수정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채우개선비, 복리후생비

2. 전체적인 의견 ⇒ 조례제정 필요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출산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양육비, 자녀교육비,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다 질 높은 보육기반이 요구되며,
- 자녀 양육에 대한 높은 보육료 부담이 출산을 저하로 이어지는 등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현실과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부모의 육아부당을 줄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 지역주민에게 보육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필요